

비씨카드 신용판매내역 EDI 서비스 특약서

가맹점 명 : (이하 “가맹점” 이라 한다)
와/과 비씨카드주식회사(이하 “비씨카드”라 함)는 가맹점 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.

선택	적용기준	번호 기재
☐	가맹점번호	

제1조 (목적)

이 특약은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가 취급하는 카드회원에 대한 “비씨카드”의 신용판매내역의 접수 및 대금청구를 전자자료로 처리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전송방식: 정보나 자료를 인쇄물 또는 자기기록장치를 통하지 않고 유·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
- EDI (Electronic Data Interchange): “가맹점”의 신용 판매 및 결제 내역을 매출표를 접수하지 않고 별도 정해진 Lay-Out에 의해 수록 후 VAN망을 통하여 당사로 접수,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
- 부가통신업자(VAN):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의 전송방식에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EDI를 중계하는 제3당사자

제3조 (신용판매대금의 청구)

- “가맹점”은 신용판매가 완료된 매출의 카드번호, 판매대금, 판매 일자, 거래종류, 승인번호, POS번호 등 제반 거래내역을 판매일자별, POS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1일 1회 별도 정해진 시간에 비씨카드”에게 전송한다. 단, 시스템 장애 시에는 익일 청구할 수 있다.
- 회원이 요청한 취소거래 중 “비씨카드”에게 매입자료를 전송하였거나, 거래승인일과 취소일이 다른 취소 거래는 신용판매대금 청구 시에 취소매출도 포함하여 “비씨카드”에게 전송 하여야 한다.
- ①항의 일괄 청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“가맹점”은 일괄청구 중계 및 “비씨카드”와 승인정산이 가능한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한 후 “비씨카드”에게 통지한다.

제4조 (신용판매대금 지급)

- “비씨카드”는 “가맹점”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에서 지급 거절 분과 가맹점 수수료액을 차감한 신용판매대금을 “가맹점”이 지정한 대금결제용 계좌에 접수일(D)을 기준으로 D+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접수일과 대금지급일 사이에 휴무일이 있을 경우 휴무일수 만큼顺延하여 지급한다. 회산장에 등의 사유로 재전송했을 경우에는 재전송 일자를 접수일자로 한다.
- “가맹점”이 제 3 조 ②항의 취소매출을 5영업일 이내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“비씨카드”는 취소매입을 반영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에 차감한 후 입금한다.

제5조 (부도 처리)

“비씨카드”는 “가맹점”으로부터 접수한 매출표(매출 내역서)의 회원번호 오류, 분실, 도난 및 거래정지, 할부 기간 오류, 본 특약 및 가맹점 약관 위반,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대금결제가 불가 한 건들은 반송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 (불량매출 처리방법)

- “비씨카드”는 “가맹점”이 송부한 매출 내역 중 그 대금의 지급이 불가한 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“가맹점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 제외한다.
- “비씨카드”는 접수차분 별 처리내역을 입금일 전까지 부가통신 업자를 통해 “가맹점”에게 제공한다.
- “가맹점”은 처리내역을 확인하여 처리 제외 분에 대해 당초 매출내역을 취소한 후 새로운 거래승인을 받아 “비씨카드”에게 재청구 할 수 있다.

제7조 (매출표의 사후관리)

- “가맹점”은 EDI 대금결제 증빙으로 매출표를 제출하지 않으며, 동 매출표는 매출일 익월로부터 5년간 “가맹점”이 자체 보관한다. 단, 가맹점이 폐업, 합병,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보관 매출표를 “비씨카드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“비씨카드”는 전항에 규정된 “가맹점”의 매출표의 보관기간 내에 공문 등을 통해 “가맹점”에게 매출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가맹점”은 “비씨카드”가 매출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사본은 3영업일 이내에, 원본은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매출표를 “비씨카드”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.
- “가맹점”이 “비씨카드”가 요구한 매출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“비씨카드”는 차기 대금지급 시 해당 매출표의 매출금액 만큼 입금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, “가맹점”은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8조 (특약의 유효기간)

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9조 (특약의 변경 및 해지)

- 이 특약의 변경은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의 서면합의에 의한다.
- “가맹점”, “비씨카드” 중 어느 일방이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 하거나,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통지만으로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 (준 용)

본 특약은 “비씨카드”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본 특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비씨카드”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*특약서는 카드사 보관용 1부만 제출한다.

작성일

년

월

일

<가맹점>

사업장 주소

가맹점명(상호)

대표자 성명

(인)

<비씨카드>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㈜

비씨카드 주식회사

대표이사 사장 김 영 우



비씨카드 신용판매내역 EDI 서비스 특약서

가맹점 명 : (이하 “가맹점” 이라 한다)
와/과 비씨카드주식회사(이하 “비씨카드”라 함)는 가맹점 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.

선택	적용기준	번호 기재
☐	가맹점번호	

제1조 (목적)

이 특약은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가 취급하는 카드회원에 대한 “비씨카드”의 신용판매내역의 접수 및 대금청구를 전자자료로 처리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전송방식: 정보나 자료를 인쇄물 또는 자기기록장치를 통하지 않고 유·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
- ② EDI (Electronic Data Interchange): “가맹점”의 신용 판매 및 결제 내역을 매출표를 접수하지 않고 별도 정해진 Lay-Out에 의해 수록 후 VAN망을 통하여 당사로 접수,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
- ③ 부가통신업자(VAN):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의 전송방식에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EDI를 중계하는 제3당사자

제3조 (신용판매대금의 청구)

- ① “가맹점”은 신용판매가 완료된 매출의 카드번호, 판매대금, 판매 일자, 거래종류, 승인번호, POS번호 등 제반 거래내역을 판매일자별, POS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1일 1회 별도 정해진 시간에 비씨카드”에게 전송한다. 단, 시스템 장애 시에는 익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요청한 취소거래 중 “비씨카드”에게 매입자료를 전송하였거나, 거래승인일과 취소일이 다른 취소 거래는 신용판매대금 청구 시에 취소매출도 포함하여 “비씨카드”에게 전송 하야 한다.
- ③ ①항의 일괄 청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“가맹점”은 일괄청구 중계 및 “비씨카드”와 승인정산이 가능한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한 후 “비씨카드”에게 통지한다.

제4조 (신용판매대금 지급)

- ① “비씨카드”는 “가맹점”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에서 지급 거절 분과 가맹점 수수료액을 차감한 신용판매대금을 “가맹점”이 지정한 대금결제용 계좌에 접수일(D)을 기준으로 D+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접수일과 대금지급일 사이에 휴무일이 있을 경우 휴무일수 만큼顺延하여 지급한다. 회산장에 등의 사유로 재전송했을 경우에는 재전송 일자를 접수일자로 한다.
- ② “가맹점”이 제 3 조 ②항의 취소매출을 5영업일 이내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“비씨카드”는 취소매입을 반영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에 차감한 후 입금한다.

제5조 (부도 처리)

“비씨카드”는 “가맹점”으로부터 접수한 매출표(매출 내역서)의 회원번호 오류, 분실, 도난 및 거래정지, 할부 기간 오류, 본 특약 및 가맹점 약관 위반,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대금결제가 불가 한 건들은 반송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 (불량매출 처리방법)

- ① “비씨카드”는 “가맹점”이 송부한 매출 내역 중 그 대금의 지급이 불가한 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“가맹점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 제외한다.
- ② “비씨카드”는 접수차분 별 처리내역을 입금일 전까지 부가통신 업자를 통해 “가맹점”에게 제공한다.
- ③ “가맹점”은 처리내역을 확인하여 처리 제외 분에 대해 당초 매출내역을 취소한 후 새로운 거래승인을 받아 “비씨카드”에게 재청구 할 수 있다.

제7조 (매출표의 사후관리)

- ① “가맹점”은 EDI 대금결제 증빙으로 매출표를 제출하지 않으며, 동 매출표는 매출일 익월로부터 5년간 “가맹점”이 자체 보관한다. 단, 가맹점이 폐업, 합병,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보관 매출표를 “비씨카드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“비씨카드”는 전항에 규정된 “가맹점”의 매출표의 보관기간 내에 공문 등을 통해 “가맹점”에게 매출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가맹점”은 “비씨카드”가 매출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사본은 3영업일 이내에, 원본은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매출표를 “비씨카드”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“가맹점”이 “비씨카드”가 요구한 매출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“비씨카드”는 차기 대금지급 시 해당 매출표의 매출금액 만큼 입금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, “가맹점”은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8조 (특약의 유효기간)

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9조 (특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이 특약의 변경은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의 서면합의에 의한다.
- ② “가맹점”, “비씨카드” 중 어느 일방이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 하거나,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통지만으로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 (준용)

본 특약은 “비씨카드”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본 특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비씨카드”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가맹점”과 “비씨카드”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*특약서는 카드사 보관용 1부만 제출한다.

작성일

년

월

일

〈가맹점〉
사업장 주소
가맹점명(상호)
대표자 성명

(인)

〈비씨카드〉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㈜
비씨카드 주식회사
대표이사 사장 김 영 우

